

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7년 12월 13일
- 회부일자 : 1997년 12월 13일

3. 제정이유

-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대형공사 등 턴킨(일괄수주방식)공사 심의 업무가 '97년도부터 지방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심의 범위를 보완하여 기술심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,
-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심의대상 공사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공공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설계의 부실 방지 및 현 실정에 맞는 심의위원회를 운영코자 함.

4. 주요골자

-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정으로 심의대상 공사 완화
- 대형공사 등 턴킨공사(설계에서 시공까지 일괄수주방식) 심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됨에 따른 지방위원회 심의범위 확대 조정
- 심의 위원이 건설기술 심의에 대해 사전심의제도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
- 심의위원회 사전 서류확인 및 심사에 따른 수당 관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설계심의 내실화
- 기술심의 신청시 수수료 납부 의무화

5. 검토의견

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및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 범위를 보완하려는 개정 조례로서 공공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대형공사 등 턴킨공사 심의 업무를 지방에 이관하여 지방심의위원회의 범위를 확대하고,

실질적인 심의를 위하여 현장조사 및 사전 서류확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당 및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및 신설하는 개정 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